

제 1145호
1985. 7. 27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업무보편
편집인: 공보관리과 우편
전화: 731-6111-3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501 호 : 주택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2

제 502 호 : 도시계획시설(하수도, 공원)결정 및 변경결정 2

◎ 공 고

제 431 호 :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지정취소 3

공 보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01 호

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

- 1.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 1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서대문구청 주택과와 주택개량 재개발 흥은 제 5 구역 3 지구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.

1985. 7.27.

서울특별시.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주택개량재개발 흥은 제 5 구역 3 지구 재개발 사업

나. 조합의명칭 : 흥은제 5 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조합

다. 시행구역 및 면적

1) 시행구역 : 서대문구 흥은동 148 -94 일대

2) 면 적 : 82,427 평방미터

라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대문구 흥은동 48-70

- 마. 시행기간 : 85. 8. - 87.8.31.
- 바. 시행인가일 : 85.7.
- 사. 시행 자 : 주택개량 재개발 흥은 제 5 구역 3 지구재개발 조합
- 아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조서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02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공원) 결정 및 변경 결정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공원)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2 조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 6 조 1 항 1 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5. 7.27.

서울특별시.장

○ 시설조서 (하수도)	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	
신설	하수도	성동구옥수동 79 일대	2,345㎡		
○ 시설조서 (공원)	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	
기정	어린이공원	성동구옥수동 79 일대	3,212㎡		
변경	"	"	2,198㎡	같) 1,014㎡	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공 고</div>		및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열사 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 고 한다.			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31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지정취소		1985. 7. 27. 서울특별시장			
1.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7 조		다 음			
지정번호	업소명	소재지	대표자	취소사유	조치내역취소일자
123	공선설비 기업사	영등포구당산동 3 가 270-402	오 부 식	무단폐업	지정취소 85.7.26
74	강남 종합설비	영등포구영등포동 7 가 41 번지	윤 의 수	무단장소이전	" "
106	성진설비	당산동 6 가 121-143	이 용	"	" "
117	한동기전	당산동 1 가 86 번지	한 수 택	"	" "
56	신창	영등포구문래동 6 가 58-77	김 개 명	"	" "